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296

발의연월일: 2022. 4. 15.

발 의 자:이용우·홍정민·민형배

이병훈 · 송영길 · 오기형

민병덕 • 임호선 • 이수진

노웅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을 규제하고 있으며, 그 중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총자산의 100분의 6을,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그런데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직접적인 한도 규제는 보험회사의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적극적 활용 및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23년부터 부채시가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 하여야 하는 파생상품 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하여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0호 삭제 등). 법률 제 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20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0호 중 "제10호"를 각각 "제9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目 율)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 육) ① -----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 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 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 을 초과할 수 없다.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삭 제>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 품거래(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 요 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위탁증거 금(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에는 약정금액)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 분의 6(장외파생상품거래 에 관하여는 총자산의 100

분의 3 미만)

-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u>자산의 100분의 6(장외파</u>

 <u>생상품거래에 관하여는 각</u>

 <u>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u>
 3 미만)
- ②·③ (생 략)
-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과 대료를 부과한다.
 - 1. ~ 4. (생략)
 - 5.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u>제10</u>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6. ~ 15. (생략)
 - ② ~ ⑤ (생 략)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9조(과태료) ①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
| 5 <u>제</u> 9 |
| <u>ŏ</u> |
| |
| 6. ~ 15. (현행과 같음)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6 |
| |
| |
| |
| |
| |
| |
| |
| |
| |

를 부과한다.

- 1. ~ 19. (생 략)
- 20.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
 7호부터 <u>제10호</u>까지의 규정
 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
- 21. ~ 44. (생 략)
- ⑦·⑧ (생 략)

| 1. ~ 19. (현행과 같음) |
|--------------------|
| 20 |
| <u> </u> |
| |
| |
| 21. ~ 44. (현행과 같음) |
| (7) · (8) (현행과 같음) |